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

의안 번호	제74호
----------	------

제출년월일 : 2001.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에 따른 공룡전시관건립 및 그 부대시설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사업명 :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
- 사업내용: 공룡전시관 건립 3,441.77m²(1,041.1평/1동)
그 부대시설공사 : 진입로, 조경, 기타등
- 사업기간 : 2001. 12. - 2003. 12.

3. 의결요청(안) : 붙임

계속비 사업시행계획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19조, 지방재정법 제40조 3항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도 지출할 수 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40조 3항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항(예산안의 첨부서류)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호 ~ 제8호 내용 생략

. 제9호 :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예산의 이월)

-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호 :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 2호 :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 3호 :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연도의 예산과목

. 4호 :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 5호 : 이월사유

○ 지방자치법 제1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계속비 대상사업

- 사업명 :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
- 사업내용 : 공룡전시관 및 그 부대시설공사
 - 공룡전시관 건립 : 3,441.77㎡/1동(1,041.1평/1동)
 - 그 부대시설공사 : 진입도로 100m, 조경, 기타등
- 사업기간 : 2001년 12. ~ 2003. 12(3년)
- 계속비사업 시행사유 :
 - 2001. 12월 착공예정인 공룡전시관건립 및 그 부대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이 3년간 소요되는 계속비공사로서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1년), 사고이월(1년)등의 절차를 통한 예산집행과 시기적 공사량의 분할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므로써 사업비집행의 적정과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기하고자함.
- 공종별 공사 소요예산 및 기간 (단위:천원)

공 종		공 사 개 요	예 정 공 사 비	공 사 기 간
총 계			10,678,000	
기반시설	합계		1,509,000	
	토목공사비	소 계	518,852	
		토 공	19,043	2001. 12 ~ 2003.12.
		배 수 공	27,714	2001. 12 ~ 2003.12.
		구조물공	223,570	2001. 12 ~ 2003.12.
		포 장 공	186,889	2001. 12 ~ 2003.12.
		상수도공	61,636	2001. 12 ~ 2003.12.
	조경공사비	소 계	573,744	
		조경시설물공	421,768	2001. 12 ~ 2003.12.
		조경식재공	151,976	2001. 12 ~ 2003.12.
	전기공사비	전기통신공	108,020	2001. 12 ~ 2003.12.
	부 대 공		191,862	2001. 12 ~ 2003.12.
	세 잡 비	재잡비	116,522	
공룡전시관	합계		5,169,000	
	건축공사비	소 계	5,169,000	
		건 축 공	2,136,000	2001. 12 ~ 2003.12.
		기계,기계소방공	940,000	2001. 12 ~ 2003.12.
		전기,통신,전기소방공	672,000	2001. 12 ~ 2003.12.
		재잡비	1,199,800	
	오수정화시설	221,200	2001. 12 ~ 2003.12.	
전시공사비	전시관관련시설공	2,000,000	2002. 1 ~ 2003.12.	
자료구입비	공룡 및 일반화석	2,000,000	2002. 1 ~ 2003.12.	

□. 계속비 사업조서

(금액: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총액	당해년도(2001)		2002년도 계획액 (예산액)	2003년 계획액 (예산액)	비고
			계획액 (명시이월포함) 명시이월 예산액	소계			
백악기공룡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룡 전시관 및 그 부대 시설공사 ○ 공룡전시관 3,441.70㎡ ○ 진입도로 L= 100m ○ 조경 1식 ○ 기타	10,678,000	1,939,500	4,000,000	5,939,500	2,400,000	2,338,500

○ 예산집행 및 확보사항
- 총괄(2000 ~ 2006)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01		2002		2003. 이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계	20,500,000	5,939,500	1,863,974	2,400,000		12,160,500	
설계용역비	760,000	500,000	500,000			260,000	
감리비	200,000	200,000					
토지매입비	1,700,000	1,300,000	1,299,754	400,000			
시설비	17,745,000	3,869,500	57,121	1,995,000		11,880,500	
시설부대비	95,000	70,000	7,099	5,000		20,000	

※ 2001년 예산액은 2000년 명시이월비(1,939,500천원)포함

- 2001년도 집행현황 및 2002.2003년도 계획

구분	예산액	집행현황		집행잔액	계속비 대상액	비고
		내역	금액			
합계	합계	10,678,000		1,863,974	8,814,026	10,678,000
	시설비	10,398,000	시설비	1,856,875	8,541,125	10,398,000
	시설부대비	80,000	시설부대비	7,099	72,901	80,000
	감리비	200,000	감리비		200,000	200,000
2001	소계	5,939,500		1,863,974	4,075,526	5,939,500
	시설비	5,869,500		1,856,875	4,012,625	5,869,500
			기본설계	313,481		
			실시설계	242,370		
			편입토지등기 토지보상	1,270 1,299,754		
시설부대비	70,000	공고 광고료 감정평가수수료 기타(사진료등)	4,510 2,198 391	62,901	70,000	
감리비	200,000			200,000	200,000	
2002	소계	2,400,000			2,400,000	2,400,000
	시설비	2,395,000			2,395,000	2,395,000
	시설부대비	5,000			5,000	5,000
	감리비					
2003	소계	2,338,500			2,338,500	2,338,500
	시설비	2,333,500			2,333,000	2,333,500
	시설부대비	5,000			5,000	5,000
	감리비					